

국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식 촉구하여 한반도의 핵폐기물 오염 긴장을 유발하였습니다.

대만정부는 핵폐기물 처리 처분에 대한 북한의 기술경험이 전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핵오염 방지를 위한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 협약과 자국내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자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바젤협약, 그리고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는 런던협약 등으로 자국내 핵폐기물을 절대로 외국에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을 위반하면서 대만정부와 북한정부는 핵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신이라는 핵폐기물 오염지역 주민의 괴 맷한 절규도 외면한 채 상호간 핵폐기물 수출·입 협약을 체결하여 92년 단교한 대만정부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만정부는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가동한 진산, 귀성, 마안산 원자력발전소 6기 원자로에서 발생한 200ℓ 기준 9만 8,000드럼의 중저해 핵무기 핵폐기물을 대만 란위섬에 보관하면서 란위섬 주민들이 방사능 핵오염으로 주민 사이에서 20%의 저능아 발생과 신체불구자 등 원자력 피해가 계속 증가되자 대만 란위섬 주민들도 誓死反核이라는 구호로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분노가 충천하고, 대만 地方自治團體의 반발이 거세어 새로운 핵폐기물저장고 지역선정과 건설이 불가하여지자 대만 핵폐기물 6만 배럴을 북한 경협차원에서 북한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 산업쓰레기 핵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1994년 서해안 굴업도에 대한 우리政府의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북한정권은 대남방송을 통하여 북한 서해안 코앞에 죽음의 쓰레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북한정권은 비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特別市議會는 대만정부의 북한지역에 대한 대만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수출을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中央政府에서 한반도의 원자력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대만 핵폐기물 수출 철회를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자 계안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원자력 핵 오염방지를 위하여 中央政府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주기를 제안하는 결의안의 내용으로서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의 산업쓰레기의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대만정부의 대만 원자력발전소 진산 1호기, 원산 4호기 핵폐기물 6만배럴의 북한 수출은 중지되어야 하고, 대만정부는 1990년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해서 핵폐기물 국외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북한의 외국 핵폐기물 산업쓰레기 수입 매립에 따른 한반도 오염방지를 위하여 북한은 핵폐기물 외국산업쓰레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特別市議會는 한반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中央政府에서는

1. 국제민간단체와 연계한 국제여론 조성과 대만정부와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입을 저지,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2. UN과 IAEA에 핵폐기물 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무경험과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여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을 저지하는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3. 대만 핵폐기물에 대한 대만정부의 북한 지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만제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
4. 대만정부 스스로 1990년 IAEA협약, 바젤 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하여 실천할 것을 외교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제안하고 예비심사한 臺灣核廢棄物의 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臺灣核廢棄物의 北韓輸出撤回促求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

4 (第92回-第4次)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의 산업쓰레기로 의한 환경오염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대만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 처분에 대한 북한 기술경험이 전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1990년 IAEA 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을 위배하면서 대만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추진 실시하고 있다.

핵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국가간 노력으로서 1990년 체결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약과 바젤협약에 의하여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자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국제적인 관례가 확립되었으며, 런던협약에 의하여서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97.1.27. 대만 외교부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 전계획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개입하지 말 것을 공식촉구한 先兵後禮 행위를 하여 최근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대만 정부와 대만 핵폐기물 6만 배럴을 수입하여 황해도 황산 폐광지역에 매립·보관한다는 죽음과의 외교개입을 실시하고 있어 한반도지역의 원자력 환경오염에 대한 최긴장감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핵폐기물 환경오염발생이 극히 우려되고 있는 바이다.

1994년 서해안 굴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북한정권은 대남방송을 통하여 북한 서해안 코앞에 죽음의 쓰래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우리 정권에 대하여 강력히 비방한 북한은 1993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으로부터 수만톤의 산업쓰레기를 반입하여 북한전역을 국제 산업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북한지역의 한반도에 환경오염을 진행시켜 왔는데, 최근에는 대만의 원자력 기술부족으로 대만 핵폐기물 저장고가 있는 한위도지역의 방사능오염 발생으로 한위도지방 초등학교 학생 20%가 저능아로 되어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한위도지역 핵폐기물 보관에 대한 대만 지방자치단체의 항의가 거세어 대만 핵폐기물 보관문제가 심각하여지자 북한은 대만의 핵폐기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결정·추진하여 한반도 환경오염을 촉발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연구용원자로 1개만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며,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처분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어 국제원자

력기구(IAEA)나 선진국 방사선 안전규제절차에 따른 관리능력이 전무한 실정인데 대만은 78.12. 가동된 진산1호기, 85.5. 만산1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특히 대만 원전4기는 경수로보다 2배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며, 대만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기술도 낮아 대만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위도 핵폐기물 저장소는 원전1기분 200ℓ 기준 10만드럼통 보유 저장시설이 초과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장소 2기분 건설계획은 대만의 원전관리 기술미비로 한위도 주민 20%가 원자력 질병피해자로 나타났고, 국내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여론 고조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북한은 '97년 1월 28일 대만과 경협추진을 위하여 대만 진산원전의 2만배럴, 한위도 4만배럴 핵폐기물을 수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원자력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대만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극악한 반한행위로서 핵폐기물 등 방사능 오염피해는 저준위 핵폐기물 방사능물질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먹이사슬에 백혈병과 같은 괴질발생위험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학계에서 검증되었으며, (예-프랑스브장송대학의 도미니크포벨과 장프랑스와 비엘교수의 비해협근교 프랑스 아그지방의 백혈병환자 다양발생에 대한 연구결과, 저준위 핵폐기물 방사능에 의하며 오염된 해변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발표)

또한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의심스러운 현실에서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은 한반도에 핵오염을 유발시키는 반한 이적행위로서 사천오백만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남북한의 원자력사업은 상호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인바,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연계검토하여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원자력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내용

1. 중앙정부는 대만정부에 대하여 북한지역에

<p>대한 대만원자력발전소 진산호 및 란위도 핵폐기물 수출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p> <p>1. 중앙정부는 대만정부의 진산호 2만배럴과 란위도 핵폐기물 4만배럴에 대한 북한지역 수출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적극 대처할 것이며, 각국 환경민간단체와 연계한 국제여론 조성실시와 유엔과 IAEA에 핵폐기물 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무경험과 핵폐기물 수송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제기 등 대만 핵폐기물 수출저지를 위한 외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p> <p>1. 중앙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원자력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북한당국이 핵폐기물이나 유럽·일본 등 선진국 산업쓰레기 매립을 위한 수입을 중지할 것을 외교정책으로 강력히 촉구할 것.</p> <p>1. 중앙정부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수출을 저지, 중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만제품 불매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토록 할 것.</p> <p>1. 중앙정부는 북한에 영구적으로 피해를끼칠 수 있는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정책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한행위가 명백한바, 대만정부가 핵에 관련한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할 것과 북한에 핵폐기물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한 외교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p> <hr/> <p>2. 서울특별시의회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委員會 委員長 提案)</p> <p>3. 서울특별시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委員會 委員長 提案)</p> <p>4. 서울특별시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委員會 委員長 提案)</p> <p>5. 서울특별시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위원회 위원장 提案)</p> <p>6. 서울특별시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위원회 위원장 提案)</p> <p>7. 서울특별시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운영위원회 위원장 提案)</p> <p style="text-align: center;">(14時 49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倫理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3항 서울특별시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4항 서울특별시議會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p>	<p>議案과 제5항 서울특별市議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과 제6항 서울특별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제7항 서울특별市議會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p> <p>(議事権 3打)</p> <p>운영委員會 車星煥議員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車星煥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 <p>운영委員會와 建設委員會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車星煥議員입니다.</p> <p>지금부터 서울특별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및 地方自治發展·災害對策·環境保全對策·女性·交通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등 6개 特別委員會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p> <p>먼저 서울특별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p> <p>서울특별市議會 議員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리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市議會의 명예와 권리와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리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따라서 地方自治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市議會會議規則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제50조 및 同法施行令 제20조의3과 서울특별市議會委員會條例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를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p> <p>다음은 서울특별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市議會가 출범한 이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권리와 강화하고, 地方議會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地方議員의 원활한</p>
--	---